화성시 동탄9동 제2025-13호

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)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2025. 3. 18.

동 탄 9 동 장 화성시 동탄9동장인

1. 공고기간 : 2025. 3. 18. ~ 2025. 4. 4.
2. 공고 대상자 및 사유

연번	대상자 성명	생년월일	발급기간	공고사유
1	조 *재	08.03.31.	2025.4.1.~ 2026.3.31.	폐문부재
2	강 *우	08.03.30.	〃	〃
3	박 *연	08.03.27.	〃	〃
4	윤 *서	08.03.14.	〃	〃
5	노 *인	08.03.20.	〃	〃
6	김 *결	08.03.24.	〃	〃
7	권 *	08.03.31.	〃	〃
8	류 *민	08.03.18.	〃	〃
9	이 *주	08.03.29.	〃	〃

3. 안내
 가.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공고하오니, 사진 1매 (6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가로×세로 3.5cm×4.5cm 탈모상반신 사진)를 지참하고 발급기간 안에 화성시 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소명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탄9동 주민등록증 담당(☎031-5189-534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